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강귀용
대한민국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15층,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발송일 (일/월/년) 2020년 03월 16일 (16.03.2020)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KP191253PCT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9/016764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9년 11월 29일 (29.11.2019)

우선일 (일/월/년)
2018년 11월 29일 (29.11.2018)

국제특허분류(IPC)
C08J 7/02(2006.01)i, C08K 5/06(2006.01)i, C08L 83/00(2006.01)i, C08L 23/08(2006.01)i, H01B 19/00(2006.01)i, H01B 17/58(2006.01)i, H01B 13/32(2006.01)i

출원인
세일하이텍 주식회사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20년 03월 13일 (13.03.2020)

심사관
권용경
전화번호 +82-42-481-3371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b)).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2-4	있음
	청구항	1,5-15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 D1: KR 10-2018-0037364 A (주식회사 경신전선) 2018.04.12
- D2: KR 10-0198819 B1 (세일화학 주식회사) 1999.06.15
- D3: KR 10-1998-0026937 A (세일화학 주식회사) 1998.07.15
- D4: KR 10-1999-0066146 A (엘지전선 주식회사) 1999.08.16
- D5: KR 10-2011-0039003 A (김관중 등) 2011.04.15
- D6: KR 10-2001-0113365 A (박만호 등) 2001.12.28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1. 청구항 1-4

D1에 복수의 판형 도체가 적층된 적층 도체그룹 및 상기 적층 도체그룹을 감싸도록 피복하는 튜브를 포함하는 절곡 가능한 버스바가 기재 (청구항 1, 7; 도면 19 참조)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1은 버스바심재 적층체의 재질(차이점 1)과 상기 버스바심재(10) 외주면에 튜빙되는 수축튜브(20)가 에퀴어스 시스템(Aqueous System)을 이용한 상온 수축튜브(20)인 점(차이점 2)에서 D1과 차이가 있으나,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가능한 사항이며, 차이점 2는 D2에 기재된 고분자 재료(PVC 튜브)가 팽윤제 포화수용액을 이용하여 팽창되며, 대상물에 피복된 후 자연적으로 수축됨으로써 피복 대상물을 절연시키는 점(페이지 1, 3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은 D1 및 D2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청구항 2-4: 추가적인 특징들이 상기 인용문헌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2-4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

2. 청구항 5-15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상기 단락 1.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항 1의 상온 수축튜브를 이용한 플렉시블 부스바는 D1 및 D2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D2에 팽윤제 포화수용액을 고분자 재료(PVC 튜브) 1kg 당 22L로 계량하여 준비하는 단계; 재료의 양에 따라 적절한 양의 에틸아세테이트(팽윤제) 포화수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준비된 팽윤제 포화수용액을 처리조에 투입하는 단계; 상기 처리조의 포화수용액에 30%의 팽창율을 목표로 별도로 준비된 에틸아세테이트(팽윤제)를 고분자 재료 1kg당 0.96L 내외로 투입하는 단계; 추가된 팽윤제가 미세한 방울형태로 고루 분산되어 현탁액이 생성되도록 상기 처리조를 교반하는 단계; 상기 처리조를 계속 교반하면서 준비된 상기 고분자 재료(PVC 튜브)를 투입하여 소정의 팽창도까지 팽윤처리하는 단계; 및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조로부터 처리된 재료를 꺼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기 수축제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용액 중의 팽윤제가 흡수될 때 탁한 용액이 맑아지게 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팽윤처리의 종료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개시(청구항 7; 페이지 3 참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5, 6, 8, 11, 12 및 14는 D1 및 D2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청구항 7: D2에 팽윤제에 실리콘 오일(silicone oil)이 자유 팽윤제에 대해 1-7 부피%로 추가되는 점(청구항 3, 4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9, 10: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3: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의 반복실험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5: D2의 고분자 재료(PVC 튜브)(페이지 3 참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7, 9, 10, 13 및 15는 D1 및 D2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II.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1-15는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